✹ 이 감사결과는 감사당시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하여 수감된 내용으로 감사이후 관계 법령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7년 교통과 자체종합감사 –

감사 결과 처분 내용

2017. 11.

당 진 시
(감사법무담당관)

1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소홀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제1항제2호, 제84조(과태료)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르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과태료 금액의 상한은 30만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르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교통과에서는 2015.1.1.부터 2017.6월까지의 기간 중 자동차 정기검사를 지연하여 자동차 검사를 받은 총 *,***건 / ***,***천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절차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절차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이행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

2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부적정

○ 당진시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설비를 갖춘 업체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재활용 및 무상처리 협약(2016.2.22.)」을 체결하여 도로 복구포장공사 파쇄작업에서 발생한 양질의 아스콘을 폐기물 처리하지 않고 재활용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여야 함

그런데도 교통과에서는 ◇◇◇ ◇◇◇◇◇ 포장복구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서에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절삭에서 106톤(실 처리량 94톤)의 건설폐기물(폐아스콘)이 발생함에도 협약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여부를 우선 검토하지 않았으며,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와 분리발주 않은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폐기물 처리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

3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 공사감독자는「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조(성실 및 청렴 의무)에 따라 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등 내용을 숙지한 후 설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검측하여야 하고, 공사중 현지여건과 설계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148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도 교통과에서는 ♤♤♤♤♤♤♤♤♤ 시설보수 방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설계 내역서에 기존 노후된 옥상 방수면을 제거하기 위하여 면적 205㎡의 콘크리트 인력 치핑공정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도급자가 현지 여건상 실제 대상 면적(205㎡)의 일부(33%)만 시공하였음에도, 재시공 지시 또는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설계서대로 시공된 것으로 인정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제경비를 포함한 *,***천원의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급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

❖ 처 분 요 구 ❖

과다하게 지급한 공사비 *,***천원을 회수하고,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

④ 회계업무 처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따라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1항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출장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시간 미만 출장 공무원에게 2만원으로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과오지급한 국내여비 **천원을 회수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 및 보고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⑤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에 따른 과태료 면제처리 부적정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의견 진술과 이의신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당진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등 과태료부과 처리 지침」 및 「당진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교통과-1282(2016.1.11.)호]」에 따라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해당 여부를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과태료 면제기준 첨부서류가 미비한 의견진술 8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 사실이 있으며,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재적위원 8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의결하는 등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과태료 면제처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 및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규칙)로 제정·운영하여 과태료 부과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면제처리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

6 ◩◩◩◩◩ 장비 교체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민간자본사업보조 규정에 따르면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전체 사업비 중 자비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그런데도 교통과에서는 당진◩◩◩◩◩ 추진위원회에 교부결정 되어 시행되는 2016년도 ◩◩◩◩◩ 장비 교체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계약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 입찰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진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로 구성하여야 하나 평가위원 9명 중 7명을 보조사업자인 당진시 ◩◩◩◩◩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여 구성하는 등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

7 당진시 ◔◔◔◔◔◔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실적보고서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그런데도 보조사업자인 당진시 ◔◔◔◔◔◔에서는 2016년도 보조사업 5건에 대하여 지출품의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출하였고, 실적보고 시 거래내역 및 이자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상기 표와 같이 미비하였으나, 교통과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 및 시정조치 없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정산보고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향후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보고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정산검사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